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가단2074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권효경

변론 종결2024. 9. 27.

판결 선고2024. 11. 2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54,448,2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4,448,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인 D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54,448,202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나9039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단108271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또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D과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웅희

별지